

보도시점 2026. 3. 16.(월) 12:00 (화요일 조간) 배포 2026. 3. 13.(금)

화학사고 발생 시 교통안전정보 제공... 주민대피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원

- 화학물질안전원·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협약 체결, 교통안전정보 신속 제공으로 2차 피해 예방
- 도시교통정보센터를 통한 사고정보 표출 및 우회경로 안내 협력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경찰청 및 한국도로교통공단과 3월 17일 경찰청 청사(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교통안전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현황과 우회 안내 등 안전정보를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신속히 표출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않으면 교통혼잡으로 인해 주민 대피가 지연되거나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화학사고정보, 대피장소, 통제현황 등의 안전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경찰청은 내비게이션사 등 민간 기업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고 정보 및 우회경로를 안내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시교통정보센터 플랫폼을 통해 안전정보를 표출한다.

이번 협약은 화학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와 교통안전 확보를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간 화학사고 발생 시 관련 정보가 기관 별로 개별적으로 전달되어 상황 공유와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화학사고 상황 및 교통 정보를 관계기관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업무협약서. 끝.

담당 부서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춘화	(043-830-4110)
		담당자	연구사	한은지	(043-830-4167)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	책임자	총 경	유동배	(02-3150-2052)
		담당자	경 정	전영식	(02-3150-2505)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운영연구처	책임자	처 장	강윤원	(033-749-5440)
		담당자	책임연구원	최은진	(033-749-5454)

화학물질안전원-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화학물질안전원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협약기관”이라 한다)은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교통안전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현황 및 우회 안내 등 안전정보를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신속히 표출함으로써 국민의 화학안전 확보 및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① 협약기관은 화학사고 발생 시, 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화학안전 공조체계 강화 및 협력증진에 노력하고 다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사고정보, 대피장소, 통제현황 등 안전정보를 신속히 취합·정리하여 제공한다.
2. 경찰청은 민간 내비게이션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고 알림 정보 및 우회경로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시교통정보센터의 플랫폼을 통해 안전 정보가 ‘돌발정보’ 등으로 국민에게 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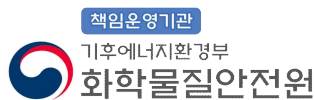
-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항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은 협약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정보보안) 협약기관은 본 협약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중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기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의 유효 및 해지)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기관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일방의 별도 통보가 없으면 협약은 자동적으로 3년간 재연장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3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박 봉 균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김 호 승



교통과학연구원장
김 은 정